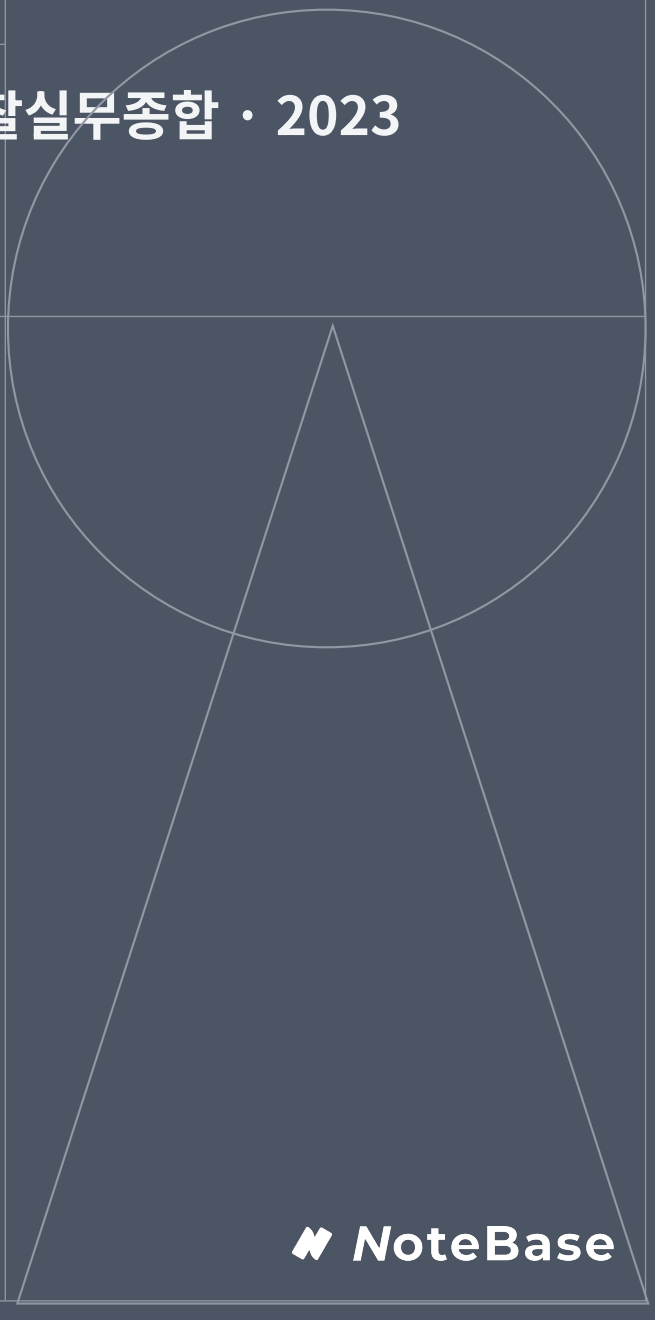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3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3

문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정보경찰은 권력적 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보경찰은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각각 조직과 작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한쪽이 다른 쪽을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X: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분석 등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 아니다**. 경찰기관의 임무로 수행되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만, 권력적 작용을 요소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해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다.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보다 **작용의 목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며,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활동을 가리킨다. 권력적 활동뿐 아니라 비권력적 활동도 포함하며, 각국의 법과 제도가 경찰기관에 부여하는 임무가 다르므로 그 범위도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X: 두 개념은 **일부가 겹치지만 서로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 정보경찰과 같은 비권력적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에만 해당한다. 반대로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위생·영업경찰작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에 해당하지만, 보통경찰기관의 활동이 아니므로 형식적 의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과 ㉢이며, 이를 모두 고른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②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과 협의

③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④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정답 2번

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와 사기진작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5. 국가경찰사무 ·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사무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 · 조정 요청

NoteBase

④

시·도지사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7. 그 밖에 시 · 도지사, 시 · 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 의결

NoteBase

문 3.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 당일이 아니라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임용시기)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3>

㉡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NoteBase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4, 2020.12.31>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학업을 계속하는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가능**하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oteBase

문 4.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심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격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 3번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출석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이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6>

NoteBase

③

징계등 의결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동의가 아니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기 범위는 **30일 이내**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특정 성별의 위원은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16, 2022.3.15>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 ·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 ·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 ·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 ·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NoteBase

문 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엄수 의무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계속**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으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은 종교중립 의무에 따라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6. 법률과 법규명령의 공포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에 별도의 시행시기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별도의 시행시기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7.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이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해야 한다.

④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형성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 뒤늦은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목적 달성에 대한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NoteBase

④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문 8. 경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개인에게 특정의무를 명하는 명령적 행정행위를 하명이라 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일반적·절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허가라 한다.

③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과 같이 주된 처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로서, 주된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④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정답 2번

①

하명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갖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작위는 행위를 할 의무, 부작위는 하지 않을 의무, 수인은 행정작용 등을 감수할 의무, 급부는 금전·물건 등을 제공할 의무이다. 의무의 내용은 달라도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명한다는 점에서 모두 하명의 내용이 된다.

②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이다. 절대적 금지는 허가로 해제할 수 없다.

③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처럼 주된 처분에 붙는 종된 규율이다.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준다.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NoteBase

④

행정지도는 지도·권고·조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문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경찰관이 보호조치 등을 하였을 때에는 (㉠)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24시간 이내에 ㉡-12 ㉢-20

② ㉠-지체없이 ㉡-24 ㉢-10

③ ㉠-24시간 이내에 ㉡-24 ㉢-10

④ ㉠-지체없이 ㉡-12 ㉢-20

정답 2번

㉠

보호조치를 한 경찰관은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

경찰관서에서 **구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NoteBase

문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 중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 발생 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을 필요한 한도에서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다**.
선지의 매우 긴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억류·피난은 이러한 이동 제한·대피를 의미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②

경찰관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하여 접근·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은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이다. 선지는 국가중요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잘못 표현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 ·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도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은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4.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NoteBase

문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예방과 제지) 및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경찰관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제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제지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사후에 드러난 결과만으로 당시의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경찰관이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②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③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는 경우를 정한 문언은 경고·제지의 시점을 실행 착수 전으로만 제한하는 뜻이 아니다. **이미 착수하여 계속 중인 범죄도 진압 대상**이므로 경고·제지가 가능하다. 다만 제지에는 생명·신체의 위해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 우려와 긴급성이 필요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④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한다. 제지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범죄가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제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NoteBase

문 12. 경찰조직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통솔범위의 원리는 관리자의 능률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통솔하는 대상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 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으로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조직편성의 원리를 명령통일의 원리라고 한다.
㉢ 계층제의 원리는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조직편성 원리의 장단점을 조화롭게 승화시키는 원리로, 무니(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집단의 활동을 전체 목표에 맞게 통일하는 것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이다. 관리자 부재에 대비한 대리·위임·사전지정은 **명령통일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관리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하의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는 원리이다. 관리 능력을 넘는 인원을 맡으면 충분한 감독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므로 적정한 통솔범위가 필요하다.

㉡ X: 구성원들의 개별 활동을 전체 목표에 맞추어 조화시키고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이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구성원이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 명령을 받고 그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원리이므로, 보기의 설명과 구별된다.

㉢ X: 대리·권한 위임·유고 시 관리자의 사전지정은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명령과 보고가 한 상관에게 집중되면 그 상관의 부재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위를 상하로 등급화하고 그 사이에 지휘·감독 및 명령·복종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이다.

㉣ O: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여러 조직편성 원리를 적용하면서 생기는 갈등과 활동 간 불일치를 조화시켜 **공동목표를 향한 행동의 통일**을 이루게 한다. 무니(Mooney)는 다른 조직 원리들이 궁극적으로 조정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로 보았다.

옳지 않은 보기는 ㉡과 ㉢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3.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NoteBase

공통 해설

예산안 편성 절차는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안 편성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순서이다. 국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미 통보한 지침을 보고하며,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편성한다.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2.10>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NoteBase

문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3명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이내 및 **감사 2명 이내**를 두고,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감사의 수를 3명으로 한 부분이 틀리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사실과 다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eBase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 · 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면**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NoteBase

문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상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청구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NoteBase

③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지는 기산점을 기간이 끝나는 날로 잘못 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개·비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도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6. 경찰통제의 유형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민주적 통제 - 국가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 국가배상제도

② 사전통제 - 입법예고제, 국회의 예산심의권, 사법부의 사법심사

③ 외부통제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훈령권

④ 사후통제 - 행정심판, 국정 감사·조사권, 국회의 예산결산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행정심판은 처분·부작위가 발생한 뒤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국정감사·조사와 결산심사는 이미 이루어진 행정활동과 예산 집행을 점검한다. 모두 **활동 이후에 심사·시정하는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경찰통제는 통제의 성격, 시점, 주체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① X: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감사청구는 국민이 감사를 요구하여 행정활동을 감시하는 제도이므로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배상제도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통제**이다.

② X: 입법예고제는 법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예산 집행에 앞서 지출의 범위와 내용을 심사하므로 사전통제이다. 반면 사법부의 사법심사는 구체적인 쟁송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경찰작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후통제**이다.

③ X: 경찰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조직 밖의 기관이며, 행정소송도 경찰조직 밖의 법원이 심판하므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훈령권은 상급 경찰관청이 하급 경찰관청의 업무처리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이므로 **경찰조직 내부의 통제**이다.

④ O: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권익을 사후에 구제한다.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가 이미 수행된 행정활동의 문제를 점검하는 권한이고, 국회의 예산결산권은 예산을 집행한 뒤 그 실적을 심사하는 권한이다. 세 제도는 모두 **이미 이루어진 활동을 심사하는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침해사건 조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조사담당자는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

제출받은 물건에는 사건번호·표제·제출자 성명·물건 번호·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의 제출물은 **진정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NoteBase

④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 이행할 수 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4. 감사원의 조사, 경찰 ·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

NoteBase

문 18. 「경찰헌장」의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은?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중략)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 경찰이다.

① ㉠ 의로운 - ㉡ 공정한 - ㉢ 깨끗한
② ㉠ 의로운 - ㉡ 깨끗한 - ㉢ 친절한
③ ㉠ 공정한 - ㉡ 깨끗한 - ㉢ 근면한
④ ㉠ 공정한 - ㉡ 의로운 - ㉢ 깨끗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의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는 **'의로운'** 경찰의 기준이다. 양심에 따른 법 집행은 **'공정한'** 경찰, 규율 준수와 검소한 생활은 **'깨끗한'** 경찰에 해당한다.

빈칸별 해설

㉠ 의로운: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의로운 경찰'을 뜻한다. 핵심은 **정의의 실현과 불의·불법의 거부**이다.

㉡ 공정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는 내용은 '공정한 경찰'을 뜻한다. **양심에 따른 법 집행**이 기준이며, 규율을 지키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깨끗한 경찰'의 내용과 구별된다.

㉢ 깨끗한: 화합과 단결 속에서 규율을 지키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내용은 '깨끗한 경찰'을 뜻한다. **규율 준수와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친절한 경찰'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봉사 태도를, '근면한 경찰'은 전문성을 기르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은 의로운, ㉡은 공정한, ㉢은 깨끗한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1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외)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단,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공직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도 해당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
배우자가 친족을 제외한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부동산을 거래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면,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거래는 제외**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 · 경매 · 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NoteBase

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ㄷ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과 민법상 가족**이 포함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4>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NoteBase

문 20. 경찰의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경우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4번

①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하면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 요구·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NoteBase

③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처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으면**,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④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선지는 '전문성'을 '신속성'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5>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NoteBase

문 21.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음주소란, 지속적 괴롭힘, 거짓 인적사항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정답 4번

①

경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직접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4조(교사 · 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②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NoteBase

③

음주소란 등, 지속적 괴롭힘, 거짓 인적사항 사용의 법정형은 모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6.9.29>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 · 극장 ·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 자동차 ·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④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NoteBase

문 2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역경찰관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②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문서의 접수 및 처리와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역경찰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하고 근무일지는 5년간 보관한다.

④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지역경찰관서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말하며, 치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지역경찰관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②

문서의 접수·처리는 **행정근무**의 업무이고,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는 **상황근무**의 업무이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 중요 사건 · 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③

근무일지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 근무일지는 3년간 보관한다.

④

대기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하면서도 **무전기를 청취하고 1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23.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112신고의 분류 중 code 3 신고로 분류한다.

② 현장 출동 경찰관은 접수자가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분류한 경우라도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112요원은 사건이 해결된 경우라면 타 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인계없이 112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④ 112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출동요소는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정답 1, 3번

①

코드 3은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이고,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는 코드 4**이다.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코드 3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7조(112신고의 대응체계)
① 경찰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112신고 내용의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12신고 대응코드(code)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4. 코드 3 신고: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5. 코드 4 신고: 긴급성이 없는 민원 · 상담 신고

②

현장 출동 경찰관도 **코드 변경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면 이미 부여된 대응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④ 112근무요원 및 출동 경찰관은 112신고 대응 코드를 변경할 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 이미 분류된 112신고 대응 코드를 다른 112신고 대응 코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타 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인계하여 후속 처리가 이어지도록 한 뒤 종결**해야 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5. 주무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추가적 수사의 필요 등으로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부서로 인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NoteBase

④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면 **현장 조치를 먼저 하고 이후 보고**할 수 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NoteBase

문 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의미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만을 의미하고 가정구성원인 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①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형사처벌 절차의 특례와 환경 조정·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안정 회복, 건강한 가정의 육성 및 피해자·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가정폭력행위자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뿐 아니라 **가정구성원인 공범도 포함**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NoteBase

④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NoteBase

문 25. 「경찰수사규칙」상 송치서류의 편철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송치 결정서, 그 밖의 서류

②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압수물 총목록, 그 밖의 서류, 송치 결정서

③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압수물 총목록, 송치 결정서, 그 밖의 서류

④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 송치 결정서

정답 1번

공통 해설

제시된 다섯 항목의 상대적인 편철 순서는 **사건송치서 → 압수물 총목록 → 기록목록 → 송치 결정서 → 그 밖의 서류**이다. 현행 규정에는 기록목록과 송치 결정서 사이에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이 추가되어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103조(송치 서류)
②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개정 2025.10.2>
1. 별지 제117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 송치 결정서
5. 그 밖의 서류

NoteBase

문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②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④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정답 4번

①

대마초와 그 수지는 **법정 대마의 범위에 포함**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④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법정 대마에서 제외**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NoteBase

문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③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④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의심이 있을 것

정답 1, 4번

①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연령상 제외기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이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제외되지만, **그해 생일 전인 18세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해당 여부와 현행 법정 연령기준은 일치하지 않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2025.4.22, 2025.10.1, 2026.4.7>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②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해야 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NoteBase

③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④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의심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NoteBase

문 28. 경비경찰의 경비수단 종류 및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위치의 원칙이란 사태 진압시의 실력행사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지형·지물·위치 등을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용이하게 한다는 원칙이다.

③ 균형의 원칙이란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안전의 원칙이란 작전 때의 변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압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경고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중단을 유도하는 **간접적 실력행사**이지만, 제지는 상대방의 행위를 강제로 막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따라서 두 수단을 모두 간접적 실력행사로 묶을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경고는 위력을 보이거나 주의를 주어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간접적 실력행사이다. 반면 제지는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해 세력을 분산하거나 주동자를 격리하는 등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이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두 수단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지만, 제지까지 간접적 실력행사로 분류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② O: 위치의 원칙은 실력행사에 유리한 지형·지물과 부대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쉽게 하는 원칙이다. 어디에 부대를 배치할 것인지, 주변 지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와 같은 **공간적 유리함의 확보**가 핵심이다.

③ O: 균형의 원칙은 상황에 맞게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배분·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원칙이다. 현재 대응을 담당하는 주력부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할 예비대를 **균형 있게 운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④ O: 안전의 원칙은 작전 중 돌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진압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도 **사고와 인명 피해의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NoteBase

문 29.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치안협력성 원칙 : 경비경찰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를 할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② 지휘관단일성 원칙 :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부대단위활동 원칙 : 부대에는 지휘관, 직원 및 대원, 지휘권과 장비가 편성되며 임무수행을 위한 보급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체계통일성 원칙 : 경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지휘관을 두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체계통일성은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나누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를 통일**하는 원칙이다. 복수의 지휘관을 두라는 의미가 아니며, 경비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지휘관을 한 사람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휘관단일성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치안협력성은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만으로 모든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모든 사태에 세밀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신고와 협조가 효과적인 경비활동을 뒷받침한다.

② O: 지휘관단일성은 신속하고 일관된 업무수행을 위해 **지휘와 보고의 경로를 일원화**하는 원칙이다. 여러 지휘관의 상충하는 지시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한 사람의 지휘관이 지시하고, 보고도 정해진 단일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 O: 경비경찰은 집단적인 경비사태에 대응하므로 개별 경찰관의 활동보다 **조직적인 부대단위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휘관·직원·대원을 편성하고 지휘권과 장비를 갖추며,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급지원체제도 마련해야 한다.

④ X: 체계통일성은 조직의 상층부에서 말단에 이르는 계통을 따라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나누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를 통일**하는 원칙이다. 복수의 지휘관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지휘관을 한 사람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지휘관단일성 원칙의 내용이다.

NoteBase

문 30. 「통합방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③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정답 2번

①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하여,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비상사태이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선지의 내용은 **병종사태**의 정의이다.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태**이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 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 ·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 ·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NoteBase

③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통합방위법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 · 보안 및 방호)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NoteBase

문 3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1번

㉠

선지는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이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 · 음모 · 선전 ·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 · 계획 ·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 외국인을 말한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NoteBase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사전 예방하게 한 신고자나 테러 가담·지원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무적 지급은 아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차량신호등' 중, 원형등화의 신호의 종류와 그 신호의 뜻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녹색의 등화 :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② 황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③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적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서행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녹색 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5gcan3ueQ5dPVdzKjP2KgzuOuBcIWLDz/view?usp=drivesdk

②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8oFRyMQDzYx05w1SmjdJU_v35EvrOiXX/view?usp=drivesdk

③

황색 등화에서는 정지선·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n5LAwcaS_nxGIPNwYo93T7zIDEkuC20P/view?usp=drivesdk

④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정지선·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단순히 서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https://drive.google.com/file/d/1tGPCwlo6kJD0VOI_M4D1nN5sAAftxuNY/view?usp=drivesdk

NoteBase

문 33.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으면 **서행**하여야 하고,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선지는 양보할 상대를 좌측도로의 차로 바꾸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의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②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③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④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정답 3번

①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에는 **부임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5.10.6, 2016.2.3, 2016.11.29, 2018.7.2, 2018.12.18, 2019.12.24, 2020.10.20, 2021.12.31, 2023.12.5, 2025.12.4, 2026.6.23, 2026.9.29>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②

천재지변·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5.10.6, 2016.2.3, 2016.11.29, 2018.7.2, 2018.12.18, 2019.12.24, 2020.10.20, 2021.12.31, 2023.12.5, 2025.12.4, 2026.6.23, 2026.9.29>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NoteBase

③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공가가 아닌 질병휴직 사유**이다.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④

법에 따른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은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5.10.6, 2016.2.3, 2016.11.29, 2018.7.2, 2018.12.18, 2019.12.24, 2020.10.20, 2021.12.31, 2023.12.5, 2025.12.4, 2026.6.23, 2026.9.29>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NoteBase

문 35.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정보수집·작성·배포에 있어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②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③ ②의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②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에는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 · 작성 · 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②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① 경찰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① 경찰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④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 고지와 정보수집·사실 확인의 목적 설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NoteBase

문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제거하는 등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 은닉 ·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②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서장은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NoteBase

③

질서유지선 설정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고지**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 고지 등)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NoteBase

문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집회시위의 해산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진 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 종결선언의 요청 → 직접해산
② 자진 해산의 요청 → 종결선언의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
③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 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
④ 종결선언의 요청 → 해산명령 → 자진 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정답 3번

공통 해설

집회·시위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종결 선언 요청 → 자진 해산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명령 불응 시 직접 해산**의 순서로 진행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 ·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 · 주관자 ·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6.9.15>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 · 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NoteBase

문 38.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2, 4번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은 **국민의 출국금지 사유이자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이다. 그 체납 사실 자체가 강제퇴거 사유인 것은 아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1.7.13, 2025.3.18>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NoteBase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다. 다만, 영주자격자는 별도로 정한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퇴거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2021.8.17>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NoteBase

④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②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
2.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라.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
마.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NoteBase

문 39. 「범죄수사규칙」상 외국인 등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한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한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①

통역을 거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선지는 이때의 진술서 언어를 한국어로 잘못 제시하였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①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에게 구속영장이나 그 밖의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8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번역문 첨부를 의무로 정하고, 제1호에서 구속영장과 그 밖의 영장 집행을 그 대상으로 열거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8조(번역문의 첨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③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할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8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번역문 첨부를 의무로 정하고, 제2호에서 외국인 압수물에 관한 압수목록교부서 교부를 그 대상으로 열거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8조(번역문의 첨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

NoteBase

④

피의자의 외교 특권 보유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③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NoteBase

문 40. 경찰관의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 甲은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중국인 피의자 A의 체포시 피의자에게 영사관원 접견 등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② 사법경찰관 乙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에 따라 구속된 중국인 피의자 B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구속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하였다.

③ 사법경찰관 丙은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영사 C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를 압수하지 않고 열람하였다.

④ 사법경찰관 丁은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한미행정 협정사건에 관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아 지체없이 공무증명서의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였다.

정답 3번

①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에는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영사기관에 체포·구속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 · 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 · 교통할 수 있고, 체포 · 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중국인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본인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구속한 날부터 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국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제7조 제1항
1.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하는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그 당국은 그 국민이 요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지체 없이 그러나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부터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파견국 영사기관에 그 국민의 이름, 신분확인 방식, 그 강제행동의 이유,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국민을 접촉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통보한다. 그러나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출입국관리 법령 위반으로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민이 서면으로 그 통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NoteBase

③

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는 **압수뿐 아니라 열람도 금지**된다. 압수하지 않았더라도 기록문서를 열람한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④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②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무증명서의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NoteBase